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사용 목적 구체화 및
수익사업 법인 설립 근거 마련 등〉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33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정훈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7.
3. 회부연월일 : 2025.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유사 법률과 달리,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되는 출연금의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수익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 규정도 없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출연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학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입법례와 같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6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에 지급되는 출연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학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법인 설립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재정적 자립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6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출연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u>한국에너지공대</u> 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출연금) ① ----- ----- ----- ---- <u>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한국에너지공대</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수익사업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u>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수익사업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u>범위에서</u>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② <u>한국에너지공대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u>운영과 연구</u>에 충당하여야 한다. <신설>	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u>운영</u>, <u>연구 및 창업 등</u>----- -----. ④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u>설립·운영</u>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특징]

구분	개정 대상 조문	주요 개정 내용
① 출연금 사용 목적 명확화	제11조제1항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지급하는 출연금의 용도를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구체적으로 명시
② 수익사업 법률 근거 직조화	제16조제1항	- 하위 법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 수익사업 수행 근거를 직접 명시
③ 수익사업 법인 설립 근거 마련	제16조제2항(신설)	-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수행 법인 설립 근거 신설 및 법인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명시
④ 수익금 충당 범위 확대 및 정관 위임	제16조제3항(개정)·제4항(신설)	- 수익금 충당 범위를 '운영, 연구 및 창업 등'으로 확대 - 법인 설립·운영의 세부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

본 개정안은 타 과학기술원과 달리 출연금의 용도가 불분명하고 수익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 규정이 미비했던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개교 초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해 온 한국에너지공대가 자체적인 기술 이전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자생적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러한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효과, 타 과학기술원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그리고 신설되는 수익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출연금 사용 목적의 구체화(안 제11조제1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현행법은 정부, 지자체(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등이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202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결과, 출연기관별로 용도가 다른 출연금을 단일 대표계좌로 이체 후 혼합하여 집행한 사실이 지적되어, 현재는 각 출연 주체별 계좌로 환원 및 분리하여 관리 중임.

[최근 3년간 한국에너지공단 출연금 예산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실적	2024년 실적	2025년 예정	주요 지출 항목 상세 내역
정부(전력기금)	30,950	25,900	29,973	사업비
-한국에너지공과 대학교 사업 지원	25,000	20,000	20,000	학생교육, 연구지원, 인프라 등
-에너지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5,600	5,600	4,183	센터구축·운영, 인프라도입
-차세대그리드 센터 구축	350	300	5,790	센터구축, 인프라도입
전라남도	10,000	10,000	10,000	사업비 (학생교육, 연구지원, 인프라 등)
나주시	10,000	10,000	10,000	사업비 (학생교육, 연구지원, 인프라 등)
한전 및 전력그룹사	110,572	168,915	80,597	교직원인건비, 경상경비, 캠퍼스건설비
합 계	161,522	214,815	130,57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위 표와 같이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공적 재원과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개정안은 출연금의 목적을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타 과학기술원 관련 법령¹⁾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과거 지적되었던 예산 혼합 집행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회계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1)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0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8조 등은 출연금의 목적을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통일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0조(출연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광주과학기술원법」 제8조(출연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둘째, 수익사업 법인 설립 근거 신설(안 제16조) 및 소관 부처의 수정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현재 부존재하는 하위법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위임되어 있던 수익사업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기술 이전 및 창업 지원 등을 전담할 독립적인 수익사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4대 과학기술원 투자법인 설립 현황 및 수익창출 실적]

법인명	미래과학 기술지주(주)	유니스트 기술지주(주)	(주)카이스트 홀딩스	지스트 기술지주(주)
회사유형	신기술창업전문 회사 ¹⁾	신기술창업전문 회사	신기술창업전문 회사	신기술창업전문 회사
설립연도	2014년	2017년	2021년	2024년
설립주체	4대 과기원	UNIST	KAIST	GIST
사업분야	직/간접 투자 정부사업기획 기술사업화 자문 연구소기업 설립	직/간접 투자 정부사업기획 기술사업화 자문 연구소기업 설립	직/간접 투자 정부사업기획 기술사업화 자문 KAIST 브랜드 사업	직/간접 투자 정부사업기획 기술사업화 자문
매출액 (2024)	3,145,689천원	133,493천원	11,300천원	미공시
영업이익 (2024)	1,956,342천원	미공시	△835,257천원	미공시
자본금	15,000,000천원	13,000,000천원	1,000,000천원	1,000,000천원

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²⁾에 따라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위 표에 나타나듯, 주요 과학기술원들은 이미 산하에 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정부사업 기획 및 기술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한국에너지공단 역시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개교 4년 차에 누적 기술이전 14건(약 27억 원), 특허 출원 173건 등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전담 법인(가칭 KENTECH 홀딩스) 설립의 실효성은 충분할 것으로 예측됨.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인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타 과학기술원법과 동일한 수준의 체계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수정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 ① 신설 법인의 활동이 무분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법인의 활동 목적 범위(기술 이전, 사업화, 창업 지원 등)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② 수익금의 충당 범위를 타 과기원법³⁾과 동일하게 '운영, 연구, 창업 등'에서 '경영과 연구'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함.

이는 공공 교육기관 산하 법인의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적절한 견제 장치로 판단되므로, 심사 시 이를 병합하여 조문을 정비할

3) 과학기술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 수행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법인은 기술 이전, 사업화, 창업지원 등의 활동만 수행해야 하고, 수익금은 '경영'에 충당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의3(수익사업) ① 과학기술원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과학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수익사업 법인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과 관리·감독 체계 간의 조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수익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세부 사항을 정관에 위임함.

그러나 대학 재정이 투입된 별도 법인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회계 부정이 발생할 경우, 모기관인 대학의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받을 소지가 존재함.

[4대 과기원 수익사업법인 관리·감독 현황]

법인명	미래과학 기술지주(주)	유니스트 기술지주(주)	(주)카이스트 홀딩스	지스트 기술지주(주)
이사회	각 과기원에서 임원 파견	대학에서 주요 임원 파견	-	-
대 표	외부공모	외부공모	교원임명(겸직)	외부공모
감사조직	감사(임원, 비상근)	감사 (임원, 비상근) (주요사항 대학 감사실 검토)	감사 (임원, 비상근)	감사 (임원, 비상근) (주요사항 대학 감사실 검토)
의사결정	중요 의사결정 주주총회 및 이사회 실시	-	-	-
운용실적 보고	과기부, 이사회, 각 과기원 본부	이사회, 주주총회, 대학본부 등	대외부총장(CFO) 산하 조직에 준하여 관리	대표가 대외부총장 직접 업무 보고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위 표와 같이 기존 과학기술원 산하 법인들은 대학에서 주요 임원 및 감사를 파견하거나, 중요 사안에 대해 대학 감사실의 검토를 받도

록 하는 등 이중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음.

한국에너지공단 역시 법인 설립 초기 단계에서 TLO(기술이전 전담 조직)⁴⁾ 인력을 겸직·파견하여 운영 안정성을 꾀한다는 계획이나, 심사 과정에서 신설 법인에 대한 이사회 통제권, 이해충돌방지지침 마련, 주무 부처에 대한 정기적 운용 실적 보고 등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및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이 정관에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7

4) 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된 지식재산권(특허 등)의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라이선싱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조직